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방식 변경〉

■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89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방식 변경 ..... | 3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17.
3. 회부연월일 : 2025. 2.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택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선택과목 중에서 국제거래법, 환경법, 국제법 등 3가지 과목에 80%가 넘는 응시자가 몰려있고, 전국 로스쿨에서 선택과목 자체가 폐강되거나 교수 채용도 중단되는 등 학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 Ⅲ. 검토의견

#### 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평가방식 변경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생략)                                                                                                                      |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u>논술형 필기시험</u> 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u>각 과목 중</u>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② ----- <u>논술형 필기시험(제9조 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은 제외한다)</u> -----.<br>----- <u>각 과목(제9항제1항제4호의 과목은 제외한다) 중</u> -----<br>-----. |
| ③ <u>법조윤리시험</u> 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u>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각각 합격 여부</u> -----<br>-----.                                                         |
|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u>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u>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 ④ -----<br>-----<br>-----<br>-----<br>-----<br>제9조제1항제4호의 과목에 대한 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각각 필요한 점수-----                         |

| 현행                 | 개정안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안은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함)에 대해 현행과 같이 총득점에 산입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만을 충족하면 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총득점 산정에서 선택과목을 제외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은 법조윤리시험과 필기시험으로 구분되고,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별로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기록형)의 방법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sup>1)</sup>

1) 「변호사시험법」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 및 과목>

| 구 분        | 과 목  |       | 시험방식            | 비 고       |
|------------|------|-------|-----------------|-----------|
| 법조윤리<br>시험 | 법조윤리 |       | 선택형             | 합격 · 불합격제 |
| 필기시험       | 공 법  | 헌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점수 합산 평가  |
|            |      | 행정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민사법  | 민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 상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 민사소송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형사법  | 형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 형사소송법 |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
|            | 선택과목 |       | 사례형             |           |

- 선택과목 시험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수험생이 선택하여 사례형 시험으로 응시하고 있음.
- 현행 변호사시험은 선택과목의 성적을 필수과목과 동일하게 총 득점에 산입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과목 간 난이도 차이와 로스쿨 간 강의 여건의 차이로 인해 수험생 간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제거래법 등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집중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sup>2)</sup>

2)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에서 7개의 전문 법률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배출하여 보다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최근 6년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거래법’<sup>3)</sup>과 ‘환경법’에 응시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짐.<sup>4)</sup>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응시자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경제            | 국제<br>거래        | 국제            | 노동            | 조세           | 지적<br>재산권    | 환경            | 전체               |
|----------------|---------------|-----------------|---------------|---------------|--------------|--------------|---------------|------------------|
| 2018년<br>(7회)  | 309<br>(9.5)  | 1,404<br>(43.3) | 241<br>(7.4)  | 415<br>(12.8) | 81<br>(2.5)  | 95<br>(2.9)  | 695<br>(21.5) | 3,240<br>(100.0) |
| 2019년<br>(8회)  | 378<br>(11.4) | 1,439<br>(43.2) | 236<br>(7.1)  | 334<br>(10.0) | 108<br>(3.2) | 114<br>(3.4) | 721<br>(21.7) | 3,330<br>(100.0) |
| 2020년<br>(9회)  | 427<br>(12.9) | 1,224<br>(36.9) | 303<br>(9.1)  | 242<br>(7.3)  | 99<br>(3.0)  | 115<br>(3.5) | 906<br>(27.3) | 3,316<br>(100.0) |
| 2021년<br>(10회) | 386<br>(12.2) | 1,147<br>(36.3) | 298<br>(9.4)  | 203<br>(6.4)  | 103<br>(3.3) | 121<br>(3.8) | 898<br>(28.5) | 3,156<br>(100.0) |
| 2022년<br>(11회) | 336<br>(10.5) | 1,291<br>(40.4) | 348<br>(10.9) | 169<br>(5.3)  | 87<br>(2.7)  | 98<br>(3.1)  | 868<br>(27.2) | 3,197<br>(100.0) |
| 2023년<br>(12회) | 258<br>(7.9)  | 1,559<br>(47.9) | 382<br>(11.7) | 138<br>(4.2)  | 71<br>(2.2)  | 103<br>(3.2) | 744<br>(22.9) | 3,255<br>(100.0) |

주) 법무부는 과목쏠림현상 방지를 위하여 2024년부터 현황을 비공개하고 있음.

자료: 법무부 법조인력과 자료 바탕으로 작성됨

현행 변호사시험 지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법학지식과 함께 합격여부를 좌우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실제 필요성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과목쏠림 현상, 현행법상 특성화 교육 및 전문 법률교육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고』 제84권 제1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p.3.

- 3) “즉, 특정 선택과목에 지나치게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해야 할 분량이 적고 수험생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강명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고』 제84권 제1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p.9.

- 4) 법무부 변호사시험 통계(2018년 ~ 2025년)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과목 편중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택 과목을 총득점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준 점수 이상만을 충족 하면 합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험생의 과목 선택 부담을 완화하고, 로스쿨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유도 하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총득점 경쟁에서 벗어난 평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응시 전략상 수험생이 특정 과목에 편중될 필요가 줄어들고, 개인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이러한 변화는 로스쿨의 교육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선택 과목 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즉, 기존에는 수험생 수요가 적은 선택과목의 경우 폐강되거나 교수 인력이 감축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수험생의 과목 선택이 점수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게 됨에 따라 법학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현재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평가 방식의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pass/fail 제도 이외에도 학점

이수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특정과목 편중 해소 등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택과목을 단순 P/F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선택과목 교육의 부실화 및 변호사 전문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학점이수제 연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시험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한 변호사협회, 교육부 등 유관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평가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와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sup>5)</sup>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과목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준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을 평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선택과목 점수를 합격여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선택과목 편중 현상과 로스쿨 내 폐강·

---

5) 선택과목의 난이도나 과목별 평가점수 가중치 조정, 법전원에서 선택과목에 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 면제 등

교원 채용 중단 등 부작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공법·민사·형사법에 대한 과도한 경쟁 심화, 암기식 학습 유도 등 부작용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다양성과 법학전공자 외 학자들의 참여 보장을 통한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들어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을 재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 6788-5060 |